

대구예술대학교 시설공사 및 계약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시설공사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계약의 원칙) 공사추정가격이 3,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자를 선정하고 3,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.

제3조 (일반경쟁입찰의 예외) ①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
②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실적과 신용 있는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 (추정가격사정) 추정 가격의 사정은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” 및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”에 의한 결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시행하되,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

1. 추정가격이 3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.
2. 추정가격이 3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5조 (수의계약) ①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1. 시설공사 금액이 3,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
2.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한하여 특정의 기술용역,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, 구조,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
3. 긴급한 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을 때
4. 재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
5. 부가공사 금액이 본 공사 금액의 3할을 넘지 않을 때의 본 공사 계약자와의 계약

② 전항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다. 다만,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.

③ 1항과 2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은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”에 따른다

제6조 (계약절차) 시설공사 추정가격이 3,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,기타 시설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장이 이를 집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